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도지사 협의체가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4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의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가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략) <u><신설></u>	제3조의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 ----- ----- ----- ----- ----- ----- 1.·2. (현행과 같 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 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사람	제3조의4(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 ----- 1.·2. (개정안과 같 음) 3. <u>다문화가족정책</u> <u>에 관하여 학식</u> <u>과 경험이 풍부</u> <u>한 사람으로서</u> <u>「지방자치법」-</u>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5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김한규 · 문대림 · 이원택
박민규 · 이주희 · 진선미
박상혁 · 맹성규 · 김태년
진성준 · 장철민 · 한병도
위성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